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2. 10 선고 2021가단515909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B

변론 종결2021. 12. 9.

판결 선고2022. 2. 10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의 2019. 11. 27.자 및 2020. 8. 8.자 증여계약은 49,539,85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49,539,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5.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지연손해금을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당사자들의 지위

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, 소외 C는 D이라는 상호로 기타 기계 및 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며, 피고는 위 C의 배우자이다.

나. 원고와 C 사이의 계약 체결

1) 원고와 C는 2019. 10. 30. 계약금액은 60,000,000원, 기간 2019. 10. 30.부터 2019. 12. 31.까지, 납품기한 및 검수기한 2020. 1. 31.,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2.5/1000(1일당)으로 정하여 사용자가 하나의 휴대전화로 2개의 전화번호를 자유롭게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(소프트웨어) 및 장비(하드웨어)인 'E' 개발 계약(이하 '이 사건 1차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2) 원고와 C는 2020. 3. 20.경 기간 2020. 3. 20.부터 2020. 5. 4.까지로 정하여 F 개발 계약(이하 '이 사건 2차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2020. 5. 27.경 기간 2020. 5. 28.부터 2020. 6. 13.까지, 수량 190개로 정하여 G 계약(이하 '이 사건 3차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다. 원고의 대금지급

이 사건 1, 2, 3차 계약(이하 '이 사건 각 계약'이라 한다)에 따라 원고는 C에게 아래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. 한편 C는 아래 표 중 순번 1, 2 기재 각 돈을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직후 같은 금액을 주식회사 H(대표 1)에게 이체하였다.

1	2019. 10. 30.	33,000,000
2	2020. 1. 30.	8,000,000
3	2020. 3. 9.	5,140,000
4	2020. 6. 1.	7,000,000
5	2020. 6. 5.	2,750,000
6	2020. 6. 30.	1,200,000
7	2020. 7. 1.	38,000,000
합계	95,090,000	

라. 원고의 1에 대한 소제기와 조정성립

원고는 위 다.항 기재와 같이 C, 주식회사 H에게 지급된 4,100만 원에 대하여 I이 변제약속을 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16624호로 I을 상대로 약정금 41,800,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. 2021. 4. 7. 위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I, 조정참가인 C 사이에서 'I과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1. 4. 30.까지 41,000,000원을 지급하고 지체할 때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, 원고는 위 돈을 지급받으면 I에 대한 사기 사건 고소를 취소한다. 원고와 I은 이 사건 1계약과 관련하여 위 내용 외에는 상호간에 채권채무가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하고,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'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.

마. 원고의 C에 대한 계약 해제통지 및 소제기

한편, 원고는 2020. 8. 11.경 C에게 'C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후 4,100만 원 등 대금을 지급받고도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개발 및 납품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하며 C가 원고로부터 받아 I에게 지급한 위 4,100만 원을 I 으로부터 직접 반환받을 것이고, 기 지급된 나머지 대금 등에 대하여 추후 청구하겠다'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C에게 발송하였고, 그 무렵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24237호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. 그 후 위 사건은 2021. 10. 26. 'C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에서 원고가 납품받았음을 인정하는 4,264,150원 및 별도의 사건(위 라항 기재 조정사건이다)에서 C를 조정참가인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된 41,000,0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49,825,85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'는 등의 취지의 판결(지체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도 있으나 이 부분 관련 내용은 생략한다)이 선고되었다. 위 판결에 대하여는 C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3333호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.

바. C의 피고에 대한 증여

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고, 그 돈에서 처인 피고에게 2019. 11. 27. 15,000,000원, 2020. 8. 8. 43,000,000원을 각 그대로 송금하였다. 당시 C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 대금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8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

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

원고는 C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한 이 사건 돈의 송금행위(무상 증여)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배우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계약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채권(피보전채권)의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,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돈을 송금받을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이 사건 돈의 송금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는 사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- 1) 사해행위 성립 여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계약 해제에 따른 49,825,850원의 대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피보전채권은 존재한다 할 것이고, C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송금한 행위는 무상 증여행위로서 당시 C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 증여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므로, C의 피고에게의 이 사건 증여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, 그 사해의사도 인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.
- 2)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C의 무자력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(오히려 피고는 C의 처로서 C의 자력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).
- 3)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2019. 11. 27. 및 2020. 8. 8. 이루어진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채권액 중 원고가 구하는 49,539,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

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회기